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5. 2.(목) 14:00,
(지면) 2024. 5. 3.(금) 조간

배포 2024. 5. 2.(목) 09:00

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

- 해수부·과기정통부 간 해사 사이버보안, 저궤도 위성통신,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, 이하 '해수부') 송명달 차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 강도현 2차관은 5월 2일(목)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해양모빌리티* 육성·지원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* (개념) 탈탄소·디지털 등 첨단 융·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·재화를 이동(수송)시키는 수단(선박 등), 해상교통환경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

최근 해양 분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한편, 자율운항 기술개발, 해상통신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항만 구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. 이에 따라,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.

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을 고도화하고, 저궤도 위성통신* 활용 분야의 확대 및 해양·수산 분야 인공지능(AI) 일상화 등 협업**을 강화할 계획이다.

* 300~1,500km 고도에서 하루 11~15회 공전하는 저궤도위성을 활용하여 도서산간 등 통신 소외 지역이나 재난재해지상망 붕괴 등 긴급상황 시 안정적 통신을 통한 외부 소통 지원 등 신속 대응에 용이

** (주요 협력사항) △해사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(R&D) 협력, △육·해상 실증, 국제 표준화·상용화 지원, △해양·수산업 분야에 인공지능(AI) 기술 확산 지원, △해사 사이버보안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, △사이버 공격·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·복구 지원 등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“해양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해상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“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 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.”면서 “해양 분야도 지난 9월 정부에서 수립한 ‘디지털 권리장전’을 준수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함께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, 인공지능, 저궤도 위성통신 등을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창용 (044-200-5810)
		담당자	사무관	윤광상 (044-200-5818)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연진 (044-202-64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웅비 (044-202-6448)



참고 1

해수부-과기정통부 간 업무협약 체결계획

□ 추진 배경

- 스마트 선박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AI 및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한 해양·수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처 간 협력 추진

□ 체결 개요

- (일시/장소) '24.5.2.(목) 14:00~14:20 /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(1006호)
- (참석자) 해수부(차관, 해사안전정책과장), 과기정통부(2차관, 정보보호기획과장), 정보통신기획평가원·한국인터넷진흥원(본부장) 등

< 주요 협력사항 >

-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(R&D) 협력
- 연구개발 관련 육·해상 실증, 국제 표준화·상용화 지원
- 해양·수산업 분야에 AI 기술 확산 지원
- 해사 사이버보안 교육·훈련 및 인력양성
- 사이버 공격·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·복구 지원 등

□ 진행 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 ~ 14:03 ('03)	· 개회 및 업무협약 개요 설명	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
14:03 ~ 14:09 ('06)	· 인사 말씀	해수부 차관 과기정통부 차관
14:09 ~ 14:14 ('05)	· 협력현황 브리핑(IITP, KISA)	
14:14 ~ 14:17 ('03)	· 양해각서 체결	해수부 차관 과기정통부 차관
14:17 ~ 14:20 ('03)	· 기념 촬영	

해사 사이버보안 고도화 및 해양 분야 AI 일상화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'협약기관'이라 한다)는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해사 사이버보안 고도화 및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, 해양 분야 AI 일상화 추진 등 해양 분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① 해사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연구개발(R&D) 협력
- ② 해양·수산업 분야에 AI 기술 확산 지원
- ③ 연구개발 관련 육·해상 실증, 국제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
- ④ 해사 사이버보안 교육·훈련 및 인력양성
- ⑤ 사이버 공격·위협 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·복구 지원
- ⑥ 기타 협약기관 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(업무협약)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에 따른 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체계를 유지한다.

제4조(효력발생) 본 협약서는 협약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5년 주기로 자동 갱신된다.

제5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한다.

제6조(협약의 준수) 협약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·날인하고, 협약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5월 2일



해양수산부

차관 송명달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2차관 강도현